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
----------	----

제안년월일 : 1999. 3. 18.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1. 제안이유

-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조문 신설
 -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4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다음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소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 설></p>	<p>제12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p> <p>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第6節 委員會

第50條 (委員會의 設置) ①地方議會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委員會는 소관議案과 請願등을 審查·처리하는 常任委員會와 特定한 案件을 一時的으로 審查·처리하기 위한 特別委員會의 2種으로 한다. 이 경우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常任委員會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2.31>

③委員會의 委員은 本會議에서 選任한다. <改正 91.12.31>

第51條 (委員會의 權限) 委員會는 그 소관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등 또는 地方議會가 委任한 特定한 案件을 審查한다.

第52條 (委員會에서의 傍聽등) ①委員會에서는 당해 地方議會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傍聽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53條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중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 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開會한다. 다만, 閉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54條 (委員會에 관한 條例) 委員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 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7節 會 議

第55條 (議事定足數) ①地方議會는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한다.

②會議中 第1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중지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56條 (議決定足數) ①議事는 이 法에 特別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7條 (會議의 公開) 地方議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員 3人이상의 發議로 出席議員 3분의 2이상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社會의 安寧秩序 유지를 위하

(총 46)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의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3. 7. 2)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해임·보임) ①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94. 2. 18)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기중 해임 및 보임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94. 2. 1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